

청년내일저축계좌

□ 지원내용(3년 만기)

-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 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-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
 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- (근로소득공제금)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탈수급장려금) 가입 시 생계·의료수급 가구(청년)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'23년 가입자 72만원)
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□ 지원대상

구분	차상위 이하	차상위 초과
가구소득	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	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연령	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*	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**
근로기준	월 10만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	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가구재산	대도시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	

※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

*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
-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
**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100% 이하)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
-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
□ 가입 및 유지 기준

(단위 : 원/월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가입기준 (소득상한)*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	차상위 이하	4,434,816	4,434,816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
	차상위 초과	4,434,816원(청년 본인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)					

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** 유지기준: 청년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□ 해지요건

구분	해지사유	지급액
지급해지	만기 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	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
	중도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·사업소득 유지 기준 초과 +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	
환수해지	만기 -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	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-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
	중도 -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- 교육이수 기준 미달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- 본인 요청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	

□ 유의사항

-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 - **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~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**,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.
-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,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'**적립중지(2년)**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'적립중지(2년)'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(1회에 한함)되며,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·적립됩니다.
 - '적립중지(2년)'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 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,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 - 임신·출산으로 인한 퇴직자(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이거나, 육아휴직(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
- **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**,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- **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**될 수 있습니다.